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037	채물은닉, 특수채물손괴(인정된 죄명: 채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진석(기소), 유승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다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3. 12. 선고 2024고정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이 한 소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인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조경칼 등은 법리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재물손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피고인 주장)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



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 즉 피고인이 ①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파트 세대 내 우편함에 송부한 'H'이라는 제목의 우편물들 중 일부를 임의로 꺼내어 가져간 행위, ② 아파트 노인회장 피해자 D이 아파트 정문 앞에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조정칼 등으로 끈을 끊어 철거한 행위는 그 각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검사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7. 16:27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조경칼로 현수막의 끈을 끊고 이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총 77만 원을 들여 설치해 둔 현수막 12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같이 형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가 이루어졌더라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 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사용된 조경칼, 낫 및 과도는 그 용법이 물건을 자르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여 현수막 끈을 잘랐더라도 그 대상인 현수막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죄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듯 비록 현수막의 끈을 끊기 위험이라는 목적 자체는 옳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조경칼은 물건을 자르기 위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조경칼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칼 등이 형법 제369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양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



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즉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호 _____

 판사 김성열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판사 이은정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0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및 피해품	범행도구 (위험한 물건)
1	2023. 8. 17. 16:27경	B 아파트 정문 앞	위험한 물건인 조경칼로 현수막의 끈을 끊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함.	조경칼
2	2023. 8. 17. 16:30-17:00경	B 아파트 E동 앞	상동	상동
3	2023. 8. 17. 16:30-17:00경	B 아파트 I동 앞	상동	상동
4	2023. 8. 18. 06:00-07:00경	B 아파트 정문 앞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현수막의 끈을 끊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함.	낫
5	2023. 8. 18. 06:00-07:00경	B 아파트 E동 앞	상동	상동
6	2023. 8. 18. 06:00-07:00경	B 아파트 I동 앞	상동	상동
7	2023. 8. 18. 18:00-19:00경	B 아파트 정문 앞	상동	상동
8	2023. 8. 18. 18:00-19:00경	B 아파트 E동 앞	상동	상동
9	2023. 8. 18. 18:00-19:00경	B 아파트 I동 앞	상동	상동
10	2023. 8. 19. 08:00-09:00경	B 아파트 정문 앞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현수막의 끈을 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	과도
11	2023. 8. 19. 08:00-09:00경	B 아파트 E동 앞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현수막의 끈을 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	과도
12	2023. 8. 19. 08:00-09:00경	B 아파트 I동 앞	상동	상동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설치비용 합계 77만 원 상당의 현수막 12개를 손괴				